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R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320호

의 안 명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수요자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의 결 일 2020. 7. 20.

주 문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수요자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20일

위원장 전 현 희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 수요자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

2020. 7. 20.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고지 의무화 ...	2
2. 유치원 교사의 예비군 훈련 면제 신청서류 간소화	4
3. 운전면허 소지 외국인의 주소변경 처리절차 개선	6
III.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8



I.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 의견을 내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19.11.19. 국민과의 대화)
- ▶ 어려움이 클수록 **답은 현장에** 있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20.2.4. 국무회의)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의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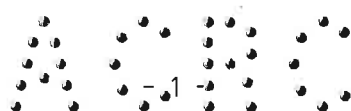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복잡한 행정절차, 불명확·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민원을 초래하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비군 훈련 면제, 외국인 운전면허 소지자의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고충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공공서비스 혜택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고지 의무화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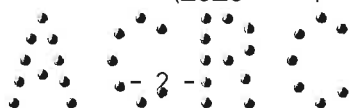
□ 현 황

-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가 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모자보건법」 제8조 제4항),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의 정보를 기록·관리(「모자보건법」 제9조의2)
 - * 미숙아 : 조산(37주 미만) 또는 저체중(2.5kg 미만)으로, 의료기관장이 특별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 **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그로 인해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미숙아등을 대상으로 진찰, 수술, 입원비용 등 의료 지원

<대상별 의료지원 내용>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지원요건	▪ 긴급 수술·치료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 이상 진단 &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 상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좌동
지원한도	▪ 출생 체중에 따라 3백만원~ 최대 1천만원(1kg 미만)까지 차등 지원 ▪ 지원률 : 지원대상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 1백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	▪ 1인당 5백만원 ▪ 지원률 : 좌동
신청기한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한 경과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 좌동

(2020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 문제점

- 미숙아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뒤늦게 의료비 지원 사실을 알고 신청해도, **신청기한**(퇴원 후 6개월 이내)이 **경과되는 경우 혜택에서 배제**
 -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지자체(보건소)도 있어 **지역간 불평등** 문제도 야기

- '17.1월 둘째 아이가 임신 35주만에 2.3kg의 미숙아 상태로 태어나 영유아 중환자실에서 1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음. '18.7월경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처음 듣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거절 당함. 출산 후 제대로 안내도 해 주지 않으면서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함(국민신문고, '18.8월)
- '16.4월 2.3kg의 아이를 출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당시 ○○보건소가 아무런 안내도 해주지 않아 의료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였음. '17.3월에 관련 내용을 알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신청기한 경과로 지원받지 못함(국민신문고, '17.3월)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1. 1.]

-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을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 하도록 규정

※ 의료기관(미숙아등 출생 보고) → 보건소(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미숙아 등의 부모(의료비 지원 신청) → 보건소(의료비 지원)

⇒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반영

2 유치원 교사의 예비군 훈련 면제 신청서류 간소화

[국방부]

□ 현 황

-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동원 소집을 명하거나 연간 20일 한도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원·훈련의 '보류'를 인정(「예비군법」 제5조, 제6조)
 - (보류 개념) 예비군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실무상 '면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 (보류 대상) 법령에서 정하는 **법정보류**(국외 체류중인 자, 국외 왕래 선박의 선원, 경찰관 등 18개 직종)와 국방부 훈령으로 정하는 **방침보류**(세관 조사공무원, 각급 학교 교사·학생 등 40개 직종)로 구분
 - (보류 신청) 보류 대상자는 보류원서와 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제출
- 방침보류 직종에는 '각급 학교(국·공립, 사립) 교사'로서 **유치원 교사***도 포함되어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예비군교육훈련 훈령」 제23조 별표3)
 - * '19.4월 기준 전국 8,837개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는 총 53,362명으로 이 중 남성은 872명이며 평균연령은 34.2세 (2019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 ** '각급 학교 교사'의 경우, 예비군 5~6년차에 기본훈련(8시간/년)만 이수하면 되며, 1~4년차 동원훈련(2박3일/년) 및 5~6년차 작계훈련(2회, 12시간/년) 면제

□ 문제점

- 초·중·고교 교사의 경우 보류 신청시 재직증명서만 제출
- 반면, 채용 절차나 자격에 있어 초·중·고교 교사와 동일한 유치원 교사의 경우 재직증명서 외에 추가로 '교원자격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류 불인정

※ 유치원 교사와 초·중등 교사는 임용시험을 통한 선발(국공립), 법령상 교사 자격요건(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규정 등이 동일

- 유치원 교사로 지역예비군 동대로부터 '훈련 보류' 대상이며, 보류를 받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와 교원자격증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만으로 보류신청을 받아 주면서 오로지 유치원 교사에게만 재직증명서와 교원자격증을 함께 제출하라는 것은 유치원 교사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며, 유치원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20.2월)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1. 1.]

- 유치원 교사의 예비군 훈련 보류 신청 시 초·중·고교 교사와 동일하게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개정

□ 현 황

- 외국인이 체류지(주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 출입국사무소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6조)
- 국내 운전면허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상의 주소지를 변경·등록 하여야 함

※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외국인 수 : 498,716명('17.12.) → 547,607명('18.12.) → 594,182명('19.12.)

□ 문제점

- 내국인은 전입신고 시 운전면허 정보가 경찰청 전산에 자동 반영 되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전산 시스템 연계 미비로 이중신고의 불편 야기
- 운전면허증 상 주소를 변경(신고)하지 않을 경우 교통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이 과거 주소지로 통보됨에 따라, 연체·가산금 등 2차 부담 초래

- 운전 중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이전 주소지로 발송 되어 체납이 발생하고 가산금으로 납부금액까지 증가하였음. 당초 주소 변경(주민센터) 시 별도로 운전면허증 주소를 변경(경찰서)해야 함을 알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과태료를 감경해 줄 것과 외국인의 경우에도 운전면허증 주소가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국민신문고, '17.12월)

-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과거에 거주했던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가 몇 년째 민원인 주소로 통지되고 있으니, 더 이상 주인 없는 고지서를 보내지 말아달라며 민원 제출(국민신문고, '19.4월)
- 주소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외국인이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이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이전 주소지에 우편을 발송하고 게시판에 공고한 것만으로 피청구인이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중앙행심위 재결, '20.4월)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1. 1.]

- 내국인과 같이 외국인도 전입신고 시 경찰청 전산망에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연계 (법무부-경찰청)

⇒ 법무부-경찰청 간 관련 시스템 연계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조치기한
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고지 의무화	○ 보건소로 하여금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내용을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 하도록 규정 ※ 「모자보건사업 안내」 개정	2021.1. (보건복지부)
② 유치원 교사의 예비군 훈련 면제 신청서류 간소화	○ 예비군 훈련 보류 신청 시 유치원 교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교원자격증'을 제외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개정	2021.1. (국방부)
③ 운전면허 소지 외국인의 주소변경 처리절차 개선	○ 내국인과 같이 외국인의 주소변경사항이 자동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계 ※ 관련 시스템 연계(법무부/경찰청)	2021.1. (법무부, 경찰청)

정 본 입 니 다 .

2020. 7. 21.

국 민 권 익 위 원



A C R C